##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유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54 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 강유정・박용갑・한준호

양문석 · 김한규 · 양부남

박희승 · 김우영 · 진선미

김병기 · 박균택 · 백승아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 를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,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.

이에,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(채권자, 차입금 규모, 변제기한, 이자율 등)를 첨부하여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차입금에 관한 자료(채권자, 차입금 규모, 변제기한, 이자율,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). 이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0조(회계보고) ① ~ ③ (생	제40조(회계보고) ① ~ ③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	4		
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			
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			
하여야 한다.		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1의2. 차입금에 관한 자료(채권		
	자, 차입금 규모, 변제기한,		
	이자율, 그 밖에 중앙선거관		
	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		
	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).		
	이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에		
	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		
	에 한정한다.		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		